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. 1. 18 선고 2022가단267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12. 7.

판 결 선 고 2023. 1. 18.

주 문

1.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2/380 지분에 관하여 2022. 4. 2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,264,2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,632,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. 9. 5. 'D은 원고에게 4,311,141원 및 그 중 2,198,060원에 대하여 2007. 1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(2017가소5823041)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. 10. 11. 확정되었다(이하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을 '이 사건 판결금'이라 한다).

나.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소유하다가 1975. 7. 15. 사망하였다.

다. E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들과 D 등은 2022. 4. 28. 피고들이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E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하였다.

라. E의 사망에 따른 D의 법정상속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2/380 지분으로 계산된다(갑8-3).

마. D은 2016. 11. 14.경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42/380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.

바. 피고들은 2022. 6. 23.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610,600,000원에 매도하고, 같은 달 29.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피고 B에 대한 인정 근거]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(자백간주)[피고 C에 대한 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 4, 7, 8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있었으므로,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2/380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 B는, 피고 B의 아버지와 D은 이복형제로서 피고 B와 D은 약 15년 이상 연락이 없이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분배를 위해 만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. 살피건대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선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,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취소 및 원상회복

1)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매도하였으므로
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.

2)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권액은 11,308,800원[=
4,311,141원 + 6,997,659원(= 2,198,060원 × 20% × 5,810일/365일, 원미만 버림, 이하
같다)]이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인 42/380 지분 상당액은 134,974,736원(=
610,600,000원 × 2 × 42/380)이므로, 피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가
구하는 바에 따라 11,264,2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3) 결국,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,632,118원(= 11,264,237원 ÷ 2)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
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
판결한다.

판사 강성훈

별지